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 ① 본회는 창조적 대학문화 창달의 주체적인 담당자인 전 동아리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올바른 대학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본회는 전 동아리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인의 완전한 자치실현과 이를 통한 문화선전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③ 본회는 각 동아리인의 고립 분산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각 회간의 교류와 연대활동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지위)

- ①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의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해당한다.
- ② 본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의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에 해당한다.
- ③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내 모든 중앙동아리 · 준중앙동아리를 대표한다.

제5조 (회원)

- 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1.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원인 자
 2. 본회에 소속된 중앙동아리의 회원인 자
- ②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1.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원인 자
 2. 본회에 소속된 준중앙동아리의 회원인 자
- ③ 본 조의 1항 및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이 우선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및 학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 혹은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단결권을 행사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정회원은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선전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 ④ 본회의 정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자격에 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⑤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 2. 본회 산하 의결기구 발의권
 - 3. 본회 산하 의결기구 의결권

제7조 (중앙동아리)

본회에 소속된 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자격을 얻는다. 단,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본회에 소속되더라도 중앙동아리가 아닌 형태의 자격을 부여해 권리와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본회의 구성)

- ① 본회의 의결기구로 동아리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본회의 집행기구로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③ 본회의 운영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이원화 캠퍼스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동아리총회

제9조 (지위)

동아리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동아리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의장)

- ① 동아리총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전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동아리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의장이 된다.

제12조 (소집)

- ① 동아리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2.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3. 소속 중앙동아리 1/4 이상의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
- ② 분리 운영 시에는 해당 캠퍼스의 연합회장이 소집한다.
- ③ 동아리총회는 7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 및 권한)

- ① 동아리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2.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3.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과반수의 정회원 100인 이상이 소집 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동아리연합회장단 · 동아리연합회장 · 동아리연합부회장 탄핵안

제14조 (개회)

- ① 동아리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② 동아리총회의 개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회원의 수는 각 동아리가 제출한 재적 인원 중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정회원의 수로 정한다.

제15조 (의결)

- ① 동아리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안건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동아리총회의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동아리연합회장단 · 동아리연합회장 · 동아리연합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위임할 수 없다.

제3장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제17조 (지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는 본회의 최고 대의기구이다.

제18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1. 동아리연합회장 · 동아리연합부회장
 2. 본회 분과위원장
 3. 본회 중앙동아리 대표자
- ② 본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한 명으로 제한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부회장은 각자 대의원으로 인정되어 독자적인 의결권을 인정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개진권이 인정되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1. 본회 집행위원
 2. 본회 준중앙동아리 대표자
- ⑤ 각 중앙동아리의 대표자가 전동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동대회 개회일 이전까지 그 사실을 소집권자에게 통보하고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다. 단,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있으며, 동아리연합회장단과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위임할 수 없다.
- ⑥ 본조 제1항의 지위 중 두 개 이상의 지위를 가지는 자는 하나의 의결권만이 인정되며, 이 경우 위임이 가능한 지위는 본조 제5항에 준해 대리자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의장)

- ① 전동대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전부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동아리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의장이 된다.

제20조 (소집)

- ① 전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학기당 한 번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이 소집한다.
 1.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소집 요구
 2.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3. 전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 ④ 전동대회의 소집은 최소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업무 및 권한)

- ① 전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2.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인준 및 해임
 3. 동아리총회 안건의 상정
 4. 동아리연합회장단 · 동아리연합회장 · 동아리연합부회장 탄핵안 발의
 5. 준중앙동아리의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

6. 분과의 신설 및 통폐합
 7. 중앙동아리에 대한 징계
 8. 중앙동아리에 대한 제명
 9. 기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10. 기타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상정한 안건
 11. 기타 본 회칙이 정하는 안건 및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 ② 전동대회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 중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가 전동대회에 그 의결을 요청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개회)

- ① 전동대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전동대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

- ① 전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단 · 동아리연합회장 · 동아리연합부회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의 결정에 따르며, 이는 해당 안건의 내용과 무관하다.
- ③ 전동대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발의된다. 단, 별도 발의 조건을 둔 경우 해당 조항을 따른다.
 1. 의장의 발의
 2. 동운위의 발의
 3. 재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제24조 (안건 위임)

전동대회의 안건은 위임되지 않는다. 단, 개별 안건에 대하여 전동대회의 의결을 통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혹은 동아리연합회 특별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제25조 (지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이하 “동운위”)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26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1. 동아리연합회장 · 동아리연합부회장
 - 2. 본회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소속 동아리 대표자 1인
- ② 본회 집행위원회의 국장은 동운위에 출석하여 의사개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27조 (의장)

- ① 동운위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으로 한다.

제28조 (소집)

- ① 동운위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의 요구
 - 2. 동운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제29조 (업무 및 권한)

- ① 동운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본회 제반 사업
 - 2. 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심의 및 전동대회 상정
 - 3. 본회에 신규등록하는 동아리의 준중앙동아리 자격 취득 결정권
 - 4. 본회 중앙동아리의 학생자치공간 배정 및 변경
 - 5. 소속 중앙동아리의 재등록
 - 6. 신규 중앙동아리의 소속 분과 결정권
 - 7. 소속 중앙동아리의 분과 이전 결정권
 - 8. 재등록 심의권
 - 9. 소속 중앙동아리에 대한 징계 중 회칙에 의해 동운위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사항
 - 10. 학생회관 공간사용규칙 및 이에 준하는 세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11. 세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 12. 본회 내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준
 - 13. 경고 및 제명 조치의 유예 및 변경 - 이후 전동대회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유효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무효로 한다.
 - 14. 제38조(사퇴)에 따라 발의된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한 명의 사퇴 허가 안건

제30조 (특별위원회)

동운위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운위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전동대회의 허가를 득하여 전동대회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을 수 있다.

- ① 특별위원장은 동운위에서 선임한다.
- ② 특별위원회는 설치 당시 명시된 기한이 경과하거나 동운위의 의결이 있으면 폐지할 수 있다.
- ③ 동운위보다 상위에 놓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의해 특별위원회가 폐지될 수 있다.

제31조 (개회)

동운위는 재적 단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2조 (의결)

- ① 동운위는 출석 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단위 당 1표로 제한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장단은 각자 별개의 단위로 인정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소속 동아리의 대표자와 함께 2인이 공동으로 1개의 단위를 구성 한다. 분과 내 분과위원장이 소속된 동아리의 수가 여러 개일 경우, 선출 과정에서 소속으로 기재한 동아리의 대표자로 한다.

제5장 동아리연합회장단

제33조 (지위 및 구성)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장 · 동아리연합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단은 각 캠퍼스 동아리연합회에서 각자 구성하며 소속 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③ 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동아리총회, 전동대회, 동운위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총회, 전동대회, 동운위의 의장 및 소집권을 동아리연합부회장에게 위임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동아리연합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34조 (의무)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은 모든 회원의 자유로운 문화학습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진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단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 ① 본회를 대표하여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가 된다.
- ② 동아리총회, 전동대회, 동운위를 소집한다.
- ③ 본회 집행위원회의 국장을 전동대회에서의 인준을 통해 임명한다.
- ④ 본회 집행위원회의 국장을 전동대회 인준 없이 해임할 수 있다.
- ⑤ 본회 집행위원회의 차장, 국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⑥ 본회 사업의 예산집행을 승인할 수 있다.
- ⑦ 본회의 모든 의결기구에 기타 주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⑧ 회칙개정을 단독 발의할 수 있으며, 전동대회를 통해 개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고한다.
- ⑨ 중앙동아리의 신규등록, 징계, 제명을 공고 및 선포한다.
- ⑩ 동아리연합부회장은 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며 동아리연합회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동아리연합회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⑪ 동아리연합회장단은 차기 동아리연합회장단 당선인에게 업무 전반에 대해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 (임기)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1. 차기 선거로 새로운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제37조 (탄핵)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동아리연합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장
 3. 동아리연합부회장
- ②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회칙 위반 혹은 범법 행위, 학칙 위반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전동대회에서

-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4.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 5. 전동대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
 - ③ 탄핵안 발의 시, 그 대상자는 발의 직후부터 탄핵안의 부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④ 전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 6. 전동대회 개회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7. 탄핵안 통과 후 동운위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 8. 탄핵 투표 실시
- ⑤ 탄핵 투표는 본 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준하여 시행한다. 탄핵 투표의 투표권자 또한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선거인단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 ⑥ 탄핵 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일 내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표가 무산될 시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⑦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탄핵안 또는 탄핵 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의한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제38조 (사퇴)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한 명이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망 등과 같은 원인으로 당사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 사퇴 시 동아리연합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6장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제39조 (지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운위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40조 (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한다.
 1.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2. 동아리연합회장단이 궐위 · 탄핵된 시점에서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종강일로부터 140일 이내일 경우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임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차기 동운위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단의 탄핵으로 인한 구성일 경우 탄핵의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동운위 전원이 궐위된 경우, 궐위 시점의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국장단 중 1인이 전동대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14일 안에 전동대회를 개최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1조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운위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동운위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를 위한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안정적 선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제42조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동대회의 인준을 받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43조 (비상대책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전동대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국장 1인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비상대책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지위를 승계한다.

제44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리총회, 전동대회, 동운위 회의를 소집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45조 (준용)

- ①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운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7장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제46조 (지위 및 구성)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7조 (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이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단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집행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집행국은 국장·차장·국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사안을 담당하는 부장·팀장을 집행국 내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집행위원 중 국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임명은 전동대회의 인준을 받아 동아리연합회장이 임명한다.
- ④ 집행위원 중 국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를 제외한 집행위원의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이 인준 없이 임명한다.
- ⑤ 동아리연합회장은 집행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의결기구의 별도 인준 없이 동아리연합회장의 자의에 의해 가능하다.

제48조 (업무 및 권한)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을 입안하여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 ③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49조 (집행위원장)

-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을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집행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지시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집행위원장은 전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의무)

- ① 학생회비를 배분받은 경우 전동대회에 보고한다.
- ② 예산과 결산을 전동대회에 보고한다.

제8장 중앙동아리

제51조 (지위)

- ① 중앙동아리는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로, 본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성균관대학교 내의 소모임은 모두 본회에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준중앙동아리는 본회에 신규등록한 동아리 중 중앙동아리의 권리 부여가 유예된 소모임으로,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회칙에 의거하여 정한다.
- ④ 본회의 회칙에서, 본회에 소속되지 않고 총학생회칙에 그 지위가 명시된 학생회 및 특별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성균관대학교 내의 모든 학생단체를 소모임으로 인식한다.
- ⑤ 본회의 회칙에서, 본회 소속의 모든 동아리를 아울러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동아리 · 준중앙동아리로 칭한다.

제52조 (권리)

- ① 본회 중앙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1.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받는다.
 2. 정당한 동아리 활동이 침해받을 경우 이에 저항할 수 있다.
 3.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의 선거권 및 전동 대회 의결권을 가진다.
 4. 학생회관 내 학생자치공간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② 본회 준중앙동아리는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중앙동아리의 권리 중 제3호, 제4호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단, 중앙동아리가 준중앙동아리로 강등된 경우 강등 시점이 포함된 학기에 한하여 학생자치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동아리연합회장단에 의해 연장 혹은 단축될 수 있다.

제53조 (의무)

- ① 본회 중앙동아리 · 준중앙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의무를 가진다.
 1. 동아리연합회칙 및 본회의 세칙 ·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본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존재 의미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3. 소속 정회원 중 대표자를 선발하여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4. 소속 동아리 정회원 및 동아리 가입 희망자를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동아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면접을 시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5. 올바른 대학문화 형성과 동아리인의 완전한 자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6. 중앙동아리는 상시모집으로 한다. 단, 동아리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모집 기간을 설정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중앙동아리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동아리를 회칙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등록

제54조 (신규등록)

- ① 본회에 소속되어 중앙동아리로 승격하고자 하는 성균관대학교 내 소모임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본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규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1.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설치된 단과대학과 학부 학과 및 자율체육체육에 한정하여, 자율체육체육 이외의 3개 이상의 단과대학과 6개 이상의 학과 학부로 구성된 30인 이상의 회원 명부
 - 2. 동아리 소개서
 - 3. 동아리 대표자 서약서
 - 4. 전년도 동아리 활동보고서
 - 5. 동아리 활동계획서
 - 6. 동아리 회칙
 - 7. 학우 200인 이상의 추천서명
 - 8. 기타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요구하는 서류
- ②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심의한 뒤 의견서를 첨부하여 동운위에 제출한다.
- ③ 동운위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가결될 경우 가결된 날을 기준으로 준중앙동아리 지위를 부여하며, 부결될 경우 해당 시점이 포함된 학기에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안건이 재상정될 수 없다.
- ④ 동운위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의결은 간접 반지 아니한다.
- ⑤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회칙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더라도 동아리연합회장단의 판단에 의해 그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55조 (재등록)

- ① 본회에 소속된 중앙동아리·준중앙동아리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재등록하여야 한다.
- ② 재등록은 동운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동운위는 의결을 통해 별도의 재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에 명시된 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심의·의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본회에 소속된 중앙동아리·준중앙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본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1.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설치된 단과대학과 학부·학과에 한정하여, 3개 이상의 단과대학과 6개 이상의 학과·학부로 구성된 20인 이상의 회원 명부
 - 2. 동아리 소개서
 - 3. 동아리 대표자 서약서
 - 4. 전년도 동아리 활동보고서
 - 5. 동아리 활동계획서
 - 6. 예산계획서 및 결산안
 - 7. 해당 동아리 회칙이 개정된 경우 동아리 회칙 1부
 - 8. 기타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요구하는 서류
- ④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심의한 뒤 의견서를 첨부하여 동운위에 제출한다.
- ⑤ 동운위는 재등록을 심의·의결한다.
- ⑥ 재등록하지 않은 중앙동아리·준중앙동아리는 제명 공포한다.
- ⑦ 재등록이 부결된 중앙동아리·준중앙동아리는 경고 3회를 부여한다.

제56조 (2학기 재등록)

동운위는 특정 동아리의 재등록 심의 과정에서 결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학기에 다시 재등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동아리는 전동대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동대회의 결정에 의해 해당 조치가 철회될 수 있다.

- ① 본 조에 의한 2학기 재등록 제출 요구는 1년에 4개 동아리보다 많은 동아리에 요구될 수 없다.
- ② 이의제기기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동아리의 재등록 서류는 전동대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제57조 (중앙동아리 승격 등록)

- ① 준중앙동아리는 신규 등록이 의결된 전동대회 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 중앙동아리 승격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재량에 의해 그 기간이 30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단은 학생회관 내 할당 가능한 학생자치공간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해 동운위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배정 가능한 학생자치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반려한다.
- ③ 승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재등록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등록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동운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전동대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⑤ 전동대회에 상정된 승격 심사 대상 준중앙동아리의 수가 배정 가능한 학생자치 공간의 수를 초과할 경우, 동운위는 의결을 통해 준중앙동아리 승격 안건의 상정 순서를 정한다.
- ⑥ 전동대회는 동운위가 상정한 안건을 정해진 순서대로 심의·의결하되, 배정 가능한 학생자치공간의 수보다 중앙동아리 승격이 확정된 동아리의 수가 많아지는 즉시 의결되지 않은 승격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변경)

- ① 본회에 소속된 중앙동아리는 동아리명 및 동아리 활동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동운위에 그 이유를 소명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동운위는 이를 심의·의결하며, 변경안이 의결된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은 그 변경을 2주간 유예하며 이를 공고한다.
- ③ 본회에 소속된 중앙동아리는 해당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변경은 중지되며 동아리연합회장단은 변경안을 전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④ 전동대회는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며, 가결된 경우 변경은 즉시 적용된다.

제59조 (등록 취소)

- ① 본회의 중앙동아리·준중앙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다.
 1. 누적 경고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2.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
 3. 동운위가 상정한 제명안이 전동대회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4. 해당 동아리의 내부 결정에 의해 자의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본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중 하나 이상에 의거하여 등록 취소된 동아리에 대해 즉시 제명 공포하며, 본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대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제명 공포한다.
- ③ 중앙동아리·준중앙동아리에 대한 제명은 공포 즉시 적용되나, 동아리연합회장단의 판단에 의해 학생자치공간의 회수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등록 취소된 중앙동아리·준중앙동아리의 학생자치공간은 1개월 이내에 반납되어야 한다.
- ⑤ 본회 중앙동아리·준중앙동아리에 대한 등록 취소와 제명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

한다.

제10장 분과위원회

제60조 (지위)

- ① 본회는 소속 동아리의 협력을 위해 그 분야에 따라 분과를 둔다.
- ② 각 분과는 총학생회칙의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에 해당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의 의결기구이며, 해당 분과의 분과위원장 및 소속 동아리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단, 준중앙동아리 대표자의 경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61조 (분과위원장)

- 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각 분과의 행정을 총괄하며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총학생회칙의 계열기구장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자격을 가진다.
- 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선출 시점과 관계없이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종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진행될 경우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업무 및 권한)

- 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의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동운위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회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칙에 대해 동운위가 그 인준을 거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칙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소속 동아리의 대표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소속 동아리에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의 모든 심의 및 의결은 동운위의 심의 대상이며 동운위의 의결에 의해 무효화 혹은 철회될 수 있다.

제63조 (산하기구)

- ① 본회는 분과위원회에 준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 산하기구의 명칭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산하기구의 장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자격과 이에 수반하는 의결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개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총학생회 계열기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산하기구의 설치는 회칙의 개정에 의한다.
- ④ 본회 산하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추후 설치 가능하다.

제64조 (분과위원장의 탄핵)

- ① 분과위원장은 본인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 동아리연합회장단을 포함한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전동대회에 상정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된다. 탄핵안 발의 시에는 부결 전까지 그 권한과 의결권이 정지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소속 중앙동아리 대표자 중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분과위원장의 탄핵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이 분과위원회 의장을 맡아 탄핵안을 의결하며, 이 경우 의장과 탄핵의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11장 징계

제65조 (원칙)

- ① 본회 소속 중앙동아리 · 준중앙동아리 및 그 회원이 본회의 회칙 · 목적 ·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하거나 그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 본회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집행은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66조 (유형)

중앙동아리 · 준중앙동아리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67조 (주의 · 경고)

징계 중 주의 · 경고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의 발의로 동운위가 심의 · 의결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동아리 · 준중앙동아리는 주의 조치한다.
 1. 대표자가 전동대회에 15분 이내로 지각한 경우
 2. 경미한 수준으로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경미한 수준으로 본회에 반하였을 경우
 4. 세칙에 의해 주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동아리 · 준중앙동아리는 경고 조치한다.
 1. 주의 2회가 누적되었을 경우
 2. 전동대회에 불참한 경우
 3. 재등록 서류의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예산 집행이 행해진 대외행사의 취소 및 변경에도 예산의 반납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동아리
 6. 학생자치공간 내 주류의 비치가 적발된 경우 경고 3회 조치한다.
 7. 제출 서류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8. 회칙 중대하게 위반하여 동아리연합회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
 9. 본회에 반하였을 경우
 10. 세칙에 의해 경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③ 동운위는 특정한 경우를 사전 규정해 동아리연합회장단이 동운위의 의결 없이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허가는 해당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 만료 시까지 유효하다.
- ④ 주의 및 경고는 동운위가 징계를 의결한 날짜 또는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징계를 행한 날짜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 ⑤ 경고 3회 이상 누적된 중앙동아리의 경우 동운위가 경상보조비 · 행사지원금 · 회장장학금 지원에서 제외할지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68조 (제명)

본회 소속 중앙동아리 · 준중앙동아리에 대한 제명은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이 동운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 의결한 뒤 전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단이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동운위의 의결을 생략하고 전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동대회는 해당 사항을 감안하여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동아리 · 준중앙동아리는 운영위원회에 제명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한 학기에 2회 이상 경고 조치되었을 경우
 2. 유효한 경고가 3회 누적되었을 경우
 3. 유효한 경고가 4회 누적되었을 경우
 4. 본회의 명예를 중대히 실추시켰을 경우

5. 본회와 중앙동아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중대한 수준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수준으로 회칙을 위반한 경우
 7. 등록요건에 비추어 그 활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미비한 경우
 8. 동아리연합회의 허가 및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교내 또는 교외의 개인 및 단체에 대여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동아리 · 준중앙동아리는 전동대회의 안건 상정 없이 즉시 제명 공포한다.
1. 유효한 경고가 5회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 ③ 제명의 유효기간은 제명 공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본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그 제명의 효력이 영구히 적용되도록 별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9조 (징계세칙)

- ① 기타 사항은 징계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징계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동운위가 담당하나, 전동대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세칙의 부칙으로 해당 사실을 명시해 동운위가 이를 전동대회 의결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장 선거

제70조 (통칙)

본 장의 내용은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71조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 ① 본회의 모든 선거는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선관위”)가 관할한다.
- ② 동선관위는 동아리연합회장이 동운위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 ③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선관위의 의결에 의해 정한다.
- ④ 동선관위는 투표일 20일 이전에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회장의 선거만 진행하는 동선관위의 경우 별도 제약을 두지 않는다.

제72조 (선거권)

- ① 본회에 소속된 모든 중앙동아리는 자치규약에 의해 해당 동아리 소속 본회 정회원 중 5인 이상 8인 이하의 선거인단을 선정해 동선관위에 명단을 제출한다.
- ② 선거인단은 본인의 양심에 의해 투표하며, 동아리 내부의 결정에 의해 그 의사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③ 각 중앙동아리는 5명 이내의 예비 선거인단을 지정해 동선관위에 명단을 제출 할 수 있으며, 특정 선거인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동선관위에 위임장을 제출해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은 선거 시작 일 기준 하루 전 18시까지 동선관위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73조 (피선거권)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1.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정·부후보 동반 입후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정후보만 입후보할 수 있다.
 2.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 4학기 이상 등록하고 4학기 이상 중앙동아리 활동을 한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3. 후보자는 재등록 명부 혹은 회비 납부 내역, 활동 사진 등을 동선관위에 제 출해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동선관위에서 진행한다.
- ② 분과위원장
 1. 해당 분과 소속 중앙동아리 대표자가 인정하는 본회의 정회원 중 동아리 활동 기간이 2학기 이상인 자로 한다.
 - ③ 단,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확대운영위원·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집행위원·단과대학 및 독립단위 집행위원·단과대학 및 독립단위 운영위원 및 대표자회의 대의원은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며, 후보자 등록 3일 전에 사퇴한 경우에만 후보자 자격을 인정한다.
 - ④ 본회의 집행위원은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3일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와 함께 진행되지 않는 분과위원장 선임 절차의 경우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 자격을 유지하며 분과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회 집행위원과 분과위원장은 겸임할 수 있다.

제74조 (선거의 시기)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분과위원장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동선관위의 의결에 의해 세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분과의 경우 동아리연합회장단 재선거가 시행될 경우 함께 재선거를 시행하며, 동아리연합회장단 재선거 없이 분과위원장만 선출

하는 선거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때, 해당 분과 소속 중앙동아리 대표자 중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에 의해 분과위원장은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선거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 (당선)

선거인단 재적수의 과반수 투표의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만 당선자로 한다.

제76조 (보궐선거)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이 탄핵되었을 경우 동운위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한 동선관위를 구성한다. 단, 탄핵 시점이 당해 2학기 개강일 이후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 ② 분과위원장 선거의 무산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동운위의 판단에 의해 진행한다.

제77조 (선거시행세칙)

- ①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② 선거시행세칙은 동운위가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동선관위가 구성된 경우 동선관위에 제·개정 권한이 부여되며 동운위의 제·개정 권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3장 회칙 · 세칙 · 규칙

제78조 (정의)

- ① 본회의 규정은 동아리연합회칙 · 세칙 ·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 (규정의 위계)

- ① 동아리연합회칙은 본회의 규정 중 가장 상위에 놓인다.
- ② 동아리연합회칙은 세칙에 우선하며, 세칙은 규칙에 우선한다.
- ③ 상위 규정에 충돌하는 하위 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80조 (회칙의 개정)

- ① 동아리연합회칙은 동운위의 발의에 의해 전동대회에서 개정한다. 단, 중앙동아리 대표자 15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회칙개정을 전동대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다.
- ② 회칙의 개정을 위해 동아리연합회장단이 동운위의 인준을 거쳐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회개소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회칙개정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칙개정을 전동대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다.
- ③ 동운위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의해 회개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동대회에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81조 (세칙과 규칙의 제 · 개정)

- ① 세칙은 동운위가 제 · 개정한다.
- ② 규칙은 동운위가 제 · 개정한다.
- ③ 단,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동선관위가 소집되었을 때 동선관위의 제 · 개정 권한이 우선한다.
- ④ 전동대회에서 세칙과 규칙을 제 · 개정할 수 있다.

제82조 (필수 제정)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칙 · 규칙은 필수로 제정되어야 한다.
 - 1. 공간관리세칙
 - 2. 징계세칙
 - 3. 선거시행세칙
- ② 학생회관 내의 음주 행위는 세칙과 규칙을 통해 허용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동운위에 있다.

제3조 (관례의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독립성)

본 회칙은 타 단위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5조 (의결의 시점)

1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2학기 개강일 이전까지의 기간은 2학기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2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다음 해 1학기 개강일 이전까지의 기간은 다음 해 1학기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제6조 (효력의 제한)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 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회칙개정 발의 · 가결 · 공포 시점의 동아리연합회장단에 대하여 효력하지 않는다.

제7조 (회칙의 개정)

동아리연합회칙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산하기구 ‘뜨락연합’의 지위와 권한을 변경하는 회칙개정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기록)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은 84년도에 제정하고, 85년 3월 1차 개정, 87년 9월에 2차 개정한 것을 89년 4월에 3차 개정하고 91년 4월에 4차 개정한 것을 93년 9월에 5차 개정, 94년 9월에 6차 개정, 96년 4월에 7차 개정, 2005년 11월 1일 8차 개정, 2006년 10월 31일 9차 개정, 2007년 3월 6일 10차, 2010년 5월 6일 11차, 2011년 10월 7일 12차 개정, 2012년 4월 5일 13차 개정, 2015년 12월 3일 14차 개정, 2018년 5월 30일 15차 개정, 2019년 6월 5일 16차 개정, 2022년 04월 20일 17차 개정, 2023년 3월 16일 18차 개정, 2023년 6월 16일 19차 개정, 2023년 9월 21일 20차 개정, 2024년 3월 21일 21차 개정, 2024년 5월 2일 22차 개정, 2025년 9월 25일에 23차 개정하였다.